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1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 장동혁 • 곽규택 • 유상범

조배숙 • 주진우 • 송석준

박준태 · 서범수 · 김도읍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제1항 중 "선고하면서"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고할 경우"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을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 또는 교 육감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 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5호"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보호 시설·의료시설을"을 "보호시설·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주거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 ⑨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그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을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으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를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임시조치의 변경)"을 "(임시조치의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사,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 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 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 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 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아동, 그 법 정대리인, 변호사"를 각각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
	<u>다.</u>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
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	과) ①
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는 제외한다)을 <u>선고하면서</u> 20	<u>선고하거나 약식</u>
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명령을 고지하면서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	
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	
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②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	
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	
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	
형(實刑)을 <u>선고할 경우</u> 에 병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과한다.	<u>고지할 경우</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4

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u>벌금형을 선고할 경</u>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집행한다.

⑤ ~ ⑦ (생 략)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 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 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할 경우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제4조제3항, 제5
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 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 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 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야 한다.

1. ~ 26.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 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 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 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

.
1. ~ 26. (현행과 같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
안교육기관과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
라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으
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
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③・④ (현행과 같음)
세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 ①

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 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 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 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 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호 또
는 제5호
1. ~ 4. (현행과 같음)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
<u>게 인도</u>
②
<u>제1항제3호부터 제5</u>
호까지
<u>보호시설</u> ·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
지를
<u>.</u>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 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 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 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 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저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 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
른 연고자 등의 기준은 대통령
<u>령으로 정한다.</u>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
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그 범죄경력을 확
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u>수 있다.</u>
∥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u> 또는</u>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 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 다.

- ②・③ (생략)
-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② (생 략)
 -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 ⑨ (생 략)

제22조<u>(임시조치의 변경)</u> ① (생략)

<신 설>

<u>제5호까지에 따른 응</u>
<u>급조치가</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② (현행과 같
<u>o</u>)
③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
호까지의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 <u>(임시조치의 변경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
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
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 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 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 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 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 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수 있다.

<신 설>

종류의 변경을 정구할 수 있
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
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
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
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u>할 수 있다.</u>
<u>4</u>
<u>시 • 도지사</u>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저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u>
1. ~ 9. (생략)

②・③ (생 략)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u>피</u>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
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
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
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
를 각각 준용한다.
∥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피해아동, 그 법정대
리인, 검사, 변호사
,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u> </u>
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② (생 및 취소와 변경)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 ③ <u>피해아동</u>,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 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 청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생략)
 -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 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 기 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

1002(7) 1022 007 10
및 취소와 변경)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u>
<u>검사, 변호사</u>
·.
④ (현행과 같음)
⑤
<u>검사, 시·도지사 또</u>
<u>는 시장·군수·구청장</u>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
간) ①

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u> 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 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 7 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 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 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 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 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 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조 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 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 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
<u>사, 변호사</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u>괴</u>
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
<u>대리인, 검사, 변호사</u>

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u>피해아동</u>,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④ (생 략)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③·④ (현행과 같음)